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9. 6 선고 2021가단1434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8. 9.

판 결 선 고 2022. 9. 6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9,802,726원 및 그중 2,974,914원에 대하여 2021. 9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. 7. 3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,802,7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9,802,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노진영

별지